##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889

발의연월일: 2024. 8. 16.

발 의 자:최은석・김종양・유용원

이종배 · 서일준 · 이인선

정희용 • 이달희 • 김위상

송언석 · 정연욱 · 박정하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등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시 그 유효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면서 한 차례에 한하여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대 4년의 기간 동안 혁신금융사업자로 규제적용의 특례 등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핀테크 산업 활성화 등 혁신금융서비스 개발과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규제 특례와 각종 지원을 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역할을 고려할 때, 최대 4년의 지정 기간은 혁신금융서비스가 충분히 시장에 안착하고 발전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하여 최장 6년까지 혁신금융사업자의 지위를 갖게 하여 금융 혁신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 고, 금융 산업 발전과 금융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1항).

법률 제 호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2년"을 "4년"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①	제4조(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①
금융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제5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과 관련 있는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이하 "관	
련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동	
의를 거쳐 <u>2년</u> 의 범위 내에서	<u>4년</u>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